

IX. 중 국

IX. 중 국

1. 개요

가. 관련법규 및 표준

□ 관련법규

-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식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반부정당경쟁법", "제품라벨표기규정", "정량표장상품계량감독규정", "식품라벨관리규정"

□ 관련표준

-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 "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나. 도입취지와 특징

- 식품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한 식품명칭, 품질등급, 상품수량, 식용 또는 사용방법,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그림 및 기타 설명의 총칭
- 식품라벨은 식품 포장용기에 인쇄하거나 별도의 라벨을 식품 포장용기에 부착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2. 라벨링 표기사항

가. 표기사항 : 식품명칭, 원산지, 생산업체, 생산날짜 및 유통기한, 함량, 배합원료, 식품표준번호, 품질등급, 가공기술,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경고마크 또는 경고설명, 영양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식품명칭

- 식품명칭과 관련된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이 있을 경우 규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식품명칭과 관련된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일반 명칭 또는 속칭을 채택해야 함
- "혁신", "특이", "음역", "상호", "지역속어" 또는 "상표" 등 식품 속성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는 명칭을 표기할 경우, 반드시 표기한 명칭의 부근에 같은 크기 글자로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함
- 2가지 이상 식품이 물리적으로 혼합된 명칭에는 반드시 그 식품의 혼합 속성과 분류 명칭을 나타내야 함
- 특정 가공기술로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을 모방하여 제조한 식품은 반드시 그 명칭 앞에 "인조" 등 글자로 표기해야 하며, 그 식품 속성의 명칭을 표기해야 함

□ 식품 원산지

- 식품 원산지는 반드시 행정구역에 따라 시(市급) 지역까지 표기해야 함

□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하고 제품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함
-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는 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반드시 각각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 위탁받아 식품을 생산가공하며 판매에 책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및 수탁업체의 명칭을 표기해야 함

□ 생산날짜와 유통기한

- 식품의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될 경우, 반드시 식품의 특정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알코올 함량 10% 이상의 주류, 식초, 식용소금, 고체 설탕류는 유통기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날짜의 표기방법은 반드시 국가표준의 규정에 부합되거나 "년, 월, 일"로 표기해야 함

□ 함량

- 정량포장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하며 고체, 액체를 포함한 식품은 순함량 외에 반드시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 순함량은 반드시 식품명칭과 함께 같은 쪽에 표기하며 순함량의 표기는 반드시 "정량포장상품계량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배합원료

- 배합원료는 반드시 식품 가공 시 첨가한 함량 순으로 표기해야 함
- 식품에 직접 감미제, 방부제, 착색제를 사용할 경우 배합원료표의 식품첨가제 항목 아래에 구체적 명칭을 표기해야 함.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은 반드시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식품표준

-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업체가 실행하는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또는 등록된 기업표준의 번호를 표기해야 함

□ 품질등급, 가공기술

- 식품표준이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을 표기하도록 명확히 요구할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에 대해,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를 표기해야 함
- 위탁 생산가공일 경우 위탁업체 또는 수탁업체의 생산허가증 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경고마크 또는 경고설명

- 잘못 섭취하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경우 반드시 그 라벨에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을 표기해야 함

□ 중문설명

- 식품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반드시 그 라벨에 중국어 설명을 표기해야 함
 - 의학적으로 특정 소비자에게 위협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 방사선 처리를 한 경우
 - 유전자변이 식품 또는 법정 유전자변이 원료를 포함한 경우

□ 영양, 강화 등 표기

- 식품이 그 명칭 또는 설명에 "영양", "강화" 글자를 표기할 경우, 반드시 국가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식품의 영양소와 열량을 표기해야 하며,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정량표기에 부합되어야 함

나. 표기방법

- 식품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과 분리하지 못하며 최소판매단위의 식품 또는 그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함

- 단 최소 단위의 포장 내용 또는 강제성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포장에 대응되는 내용은 중복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표기해야 하며, 라벨의 배경과 바탕색은 반드시 비교색갈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함
- 식품라벨에 사용하는 문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중국어이어야 하지만 등록 상표의 경우는 제외함
- 식품라벨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외국어는 대응되는 중국어보다 크지 말아야 함 단, 등록상표의 경우를 제외함
-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cm² 이상일 경우, 식품라벨에서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는 1.8cm보다 작아서는 않는다.
-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cm² 이하일 경우, 식품라벨은 식품 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순함량 및 생산날짜와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다. 단,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함

다. 표기 금지사항

-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
- 보건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을 서술하거나 소개
-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음
- 국기, 휘장 또는 화폐 등을 사용하여 표기
-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

3. 라벨링 사례

□ 중국산 식품



상품설명	제품명	식용방법
		보존
순합량		유통기한
		상품번호
		위생허가증번호
		생산일
		판매상주소

< 꽃가루 제품 라벨 >



상품명	전화
원료	팩스
중량	산지
상품번호	영양표시
보존방법	
생산일시	
유통기한	
제조상주소	

< 과자 라벨 >



< 과자 라벨 >



< 음료 라벨 >

□ 수입 식품

중문라벨 적용 전



중문라벨 적용



□ 한국산 식품



< 과자 라벨 전면부 예 >



제품명
중량
재료
음용방법
보존방법
제조사, 원산지
수입판매상(주소, 전화 등)

< 유자 라벨 예 >



상품명
재료
생산일
유통기한
원산지
판매상(주소, 전화 등)
식용방법

< 된장 라벨 예 >



상품명
용량, 도수
원료
생산일
보존방법
원산지
판매상(주소, 전화 등)
식용방법

< 주류 라벨 예 >

4. 식품첨가제의 라벨표기

□ 식품첨가제 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 함

- 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날짜
- 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 유통기한
- 제품표준코드
- 저장조건
- 생산허가증 번호
-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기타 사항
- 식품첨가제 사용범위
- 식품첨가제 사용량
- 식품첨가제 사용방법

5. 자료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망(www.gov.cn)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www.sac.gov.cn)
- 식품상무망(www.21food.cn)

[부 록] 라벨링 관련 법규

1) 식품안전법(시행일: 2009.6.1)

자료출처: http://www.gov.cn/flfg/2009-02/28/content_1246367.htm

제42조 : 포장식품의 포장에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1) 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날짜
- (2) 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 (3)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 (4) 품질보존기한
- (5) 제품표준코드
- (6) 저장조건
- (7) 사용한 식품첨가제가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 (8) 생산허가증 번호
- (9)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규정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기타 사항

유아와 기타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제47조 :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라벨,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제42조 (1)~(6), (8), (9)에서 규정한 사항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 표기하며, 라벨에 "식품첨가제"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48조 :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에 허위, 과대한 내용이 없어야 하며,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라벨, 설명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며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가 그 라벨, 설명서에 기록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제49조 : 식품생산판매업체는 반드시 식품 라벨에 표기한 경고표기, 경고설명 또는 주의사항의 요구에 따라 포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51조 : 특정 건강기능이 있다고 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그 라벨,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기능과 연관이 없어야 하며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적합한 소비자, 부적합한 소비자, 효능성분 또는 대표성분 및 그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66조 :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